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관사 운영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동물위생시험소(관리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편의제공을 위해 2018. 9월부터 2021. 10. 1.감사일 현재까지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2조에 따르면 관사는 도지사가 사용허가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 제3항 및 제56조에 따르면 3급 관사¹⁾는 보일러 운영비, 전기·전화·수도요금 등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관리팀)는 입주 희망 공무원으로부터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관사 운영협의회를 거쳐 입주 공무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입주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TV 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관리팀)는 [별표 1] ~ [별표 2]와 같이 2018년 9월부터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으로 지출하

1) 1급(도지사 관사), 2급(부지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 3급(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였고, 가스 사용료는 사용자가 개별 납부하고 있으나, TV 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등은 사용자로부터 매달 5만원씩 각출²⁾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명의로 만든 통장에 입금하여 위 요금을 납부하였고,

또한 2018년 9월부터 2021. 7월까지 입주 공무원을 선정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관사 운영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고 입주 직원을 선정하였으며, 관리대장에 허가일자는 기입하였으나 취소일자는 기입하지 않는 등 관사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공과금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사용과 관사 입주 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 ① 관사 이용자로부터 각출한 운영비(8,235,880원)는 납부한 이용자에게 돌려주고 관사의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분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시정)
- ②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맞게 관사를 운영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2) 2021. 10. 1. 감사일 현재 각출하여 통장에 입금한 금액 : 8,236천원

전라남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복무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동물위생시험소(방역관리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안전과,
동부지소, 북부지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진단·검사 및 연구를 위해 [표 1] “직원 현원 현황”과 같이 총 83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1] 직원 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본소	동부지소	서부지소	북부지소
계	83	45	11	14	13
수의, 농업	73	40	9	12	12
행정, 기타	10	5	2	2	1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공가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6 제5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직원에게 건강검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고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방역관리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안전과, 동부지소, 북부지소)는 2018. 10월부터 2021. 8월까지 소속직원 10명이 [표 2] “허위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수령 현황”과 같이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허가받은 후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공가를 연가처럼 사용하였는데도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허위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수령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 급	성 명	공가일 (건강검진)	건강 검진일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액	비고
		계	10명			488,100	200,530
1	○○○과	○○○	○○○	2018-10-08	2018-12-12		잔여연가없음 90,370원
2		○○○	○○○	2020-08-18	2020-08-14	108,480	
3		○○○	○○○	2020-06-12	2020-06-19		연가보상비 미지급대상
4		○○○	○○○	2021-06-21	2021-06-19		지급시기 미도래
5	○○○과	○○○	○○○	2020-10-19	2020-10-17	104,080	
6	○○○과	○○○	○○○	2019-12-02	2019-11-27	71,100	
7		○○○	○○○	2020-10-21	2020-12-02		잔여연가없음 110,160원
8		○○○	○○○	2020-06-24	2020-06-10	104,080	
9	○○○	○○○	○○○	2021-05-31	2021-05-24		연가보상비 미지급대상
10	○○○	○○○	○○○	2018-10-08	2018-10-13	100,360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소속직원 5명에게 연가 1일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488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유연근무자 출근시간 준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하고,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매일 같은 출근시각 또는 요일별 다른 출근시각을 정하여 운영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유연근무제 중 하나의 형태로 규정하고,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연근무자신청자는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관리팀, 방역관리과, 축산물안전과, 동부지소, 북부지소)는 2018. 10월부터 2021. 8월까지 소속직원 43명이 [별표] “유연근무신청자 출근 미등록 및 지각 명세”와 같이 승인된 출근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고, 복무관리시스템에 출근을 미등록하였는데도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출근시간이 준수되지 않는 등 복무기강이 해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이중 부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IV. 근무일과 공휴일에 따르면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하여야 하고,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위생과, 서부지소)은 [표 3]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이중 부여 현황”과 같이 소속직원 11명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하였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이중으로 부여하였다.

[표 3]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 이중 부여 명세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대체휴무일	대체휴무 사유	초과근무수당 수령액	비고
			11명			531,710	
1	축산물위생과	○○○	○○○	2019-08-30	○월 ○일 도축장근무	42,030	
2	서 부 지 소	○○○	○○○	2019-09-16	○월 ○일 도축장 근무	46,530	
3		○○○	○○○	2020-12-04	○월 ○일 AI 비상근무	48,000	
4		○○○	○○○	2020-11-30	○월 ○일 AI 비상근무	43,360	
5		○○○	○○○	2020-05-13	○월 ○일 금화직업장 근무	37,920	
6		○○○	○○○	2020-04-20	○월 ○일 금화직업장 근무	43,360	
7		○○○	○○○	2020-01-31	○월 ○일 도계장 근무	37,920	
8		○○○	○○○	2020-01-28	○월 ○일 도축장 근무	48,000	
9		○○○	○○○	2021-06-07	○월 ○일 도축장 근무	43,800	
10		○○○	○○○	2021-02-18	○월 ○일 도축장 근무	43,800	
11		○○○	○○○	2021-02-18	○월 ○일 도계장 근무	96,990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초과근무수당 531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5.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용 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제9장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고,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¹⁾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을 지급하고,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위생과, 방역관리과, 축산물안전과)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가는 경우 버스 운임을 지급하면서도 [표 4] “공용하이패스카드 부당 사용 현황”과 같이 6명이 16건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표 4] 공용하이패스카드 부당 사용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사용자	개인 차량 번호	출장지	사용 일자	사용 시간	카드번호	입구	출구	사용 금액
		6명			16건					84,300
1	축산물위생과	○○○		오송	2019-01-22	13:48:23	xxxx-xxxx-xxxx-xxxx	광주영업소	청주영업소	9,600
2					2019-01-22	19:06:45	xxxx-xxxx-xxxx-xxxx	청주영업소	광주영업소	9,600
3	방역관리과	○○○		김천	2019-06-28	11:01:53	xxxx-xxxx-xxxx-xxxx	동광주영업소	남김천영업소	10,100
4					2019-06-28	18:49:31	xxxx-xxxx-xxxx-xxxx	남김천영업소	동광주영업소	10,100
5				무안	2019-11-20	11:19:49	xxxx-xxxx-xxxx-xxxx	서영암영업소	강진영업소	1,700
6				무안	2019-11-28	14:40:40	xxxx-xxxx-xxxx-xxxx	강진영업소	서영암영업소	1,700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공무원 등,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연번	소속	사용자	개인 차량 번호	출장지	사용 일자	사용 시간	카드번호	입구	출구	사용 금액
7		○○○	●●●	무안	2019-12-30	14:12:38	xxxx-xxxx-xxxx-xxxx	강진영업소	서영합영업소	1,700
8				무안	2020-01-16	11:36:12	xxxx-xxxx-xxxx-xxxx	서영합영업소	강진영업소	1,700
9				무안	2021-02-04	13:51:15	xxxx-xxxx-xxxx-xxxx	강진영업소	서영합영업소	1,700
10					2021-02-10	12:39:43	xxxx-xxxx-xxxx-xxxx	서영합영업소	강진영업소	1,700
11	축산안전과	○○○	●●●	세종	2020-01-21	12:42:28	xxxx-xxxx-xxxx-xxxx	광주영업소	유성영업소	7,700
12					2020-01-21	18:52:15	xxxx-xxxx-xxxx-xxxx	남세종	광주영업소	8,100
13		○○○	●●●	세종	2020-02-19	13:31:34	xxxx-xxxx-xxxx-xxxx	광주영업소	남세종	8,100
14					2020-02-19	17:55:54	xxxx-xxxx-xxxx-xxxx	남세종	광주영업소	8,100
15		○○○	●●●	담양	2020-07-21	16:08:58	xxxx-xxxx-xxxx-xxxx	담양영업소	동광주영업소	1,500
16					2020-07-21	16:16:42	xxxx-xxxx-xxxx-xxxx	-	소태영업소	1,200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표 5]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현황”과 같이 2명이 출장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용하이패스카드 22건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5] 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성명	개인 차량 번호	출장지	사용일자	사용 시간	카드번호	입구	출구	사용 금액
	계	2명			22건					49,520
1	방역관리과	○○○	●●●	무안	2019-07-04	17:07:53	xxxx-xxxx-xxxx-xxxx	목포영업소	동광산영업소	3,200
2					2019-11-20	08:32:55	xxxx-xxxx-xxxx-xxxx	동광산영업소	목포영업소	3,200
3					2019-11-25	09:27:33	xxxx-xxxx-xxxx-xxxx	동광산영업소	목포영업소	3,200
4					2019-11-25	16:44:35	xxxx-xxxx-xxxx-xxxx	목포영업소	동광산영업소	3,200
5					2019-11-28	08:00:21	xxxx-xxxx-xxxx-xxxx	동광산영업소	서광산영업소	960
6					2019-11-28	16:47:22	xxxx-xxxx-xxxx-xxxx	목포영업소	동광산영업소	2,300
7					2019-11-28	17:06:49	xxxx-xxxx-xxxx-xxxx	-	유덕영업소	700
8					2019-12-05	08:21:34	xxxx-xxxx-xxxx-xxxx	동광산영업소	목포영업소	3,200
9					2019-12-05	21:14:53	xxxx-xxxx-xxxx-xxxx	목포영업소	동광산영업소	3,200
10					2019-12-13	07:46:55	xxxx-xxxx-xxxx-xxxx	동광산영업소	서광산영업소	960
11					2019-12-30	16:43:28	xxxx-xxxx-xxxx-xxxx	목포영업소	동광산영업소	3,200
12					2020-01-16	09:01:54	xxxx-xxxx-xxxx-xxxx	동광산영업소	목포영업소	3,200
13		○○○	●●●	무안	2021-01-27	10:09:58	xxxx-xxxx-xxxx-xxxx	-	송암영업소	1,200
14					2021-01-27	10:14:58	xxxx-xxxx-xxxx-xxxx	-	유덕영업소	700
15					2021-01-27	11:11:29	xxxx-xxxx-xxxx-xxxx	동광산영업소	목포영업소	3,200
16					2021-01-27	18:12:59	xxxx-xxxx-xxxx-xxxx	목포영업소	동광산영업소	3,200
17					2021-01-27	18:46:33	xxxx-xxxx-xxxx-xxxx	-	유덕영업소	1,200
18					2021-01-27	18:53:05	xxxx-xxxx-xxxx-xxxx	-	송암영업소	1,200
19					2021-02-04	16:39:03	xxxx-xxxx-xxxx-xxxx	목포영업소	동광산영업소	3,200
20					2021-02-10	08:46:56	xxxx-xxxx-xxxx-xxxx	-	송암영업소	1,200
21					2021-02-10	08:52:31	xxxx-xxxx-xxxx-xxxx	-	유덕영업소	700
22					2021-02-10	10:00:37	xxxx-xxxx-xxxx-xxxx	동광산영업소	목포영업소	3,200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6] “자가용 동승자 부담 운임 지급 현황”과 같이 자가용 동승 출

장자에게 부당하게 운임을 지급하였다.

[표 6] 자가용 동승자 부당 운임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출장자	출장일자	자가용 동승여부	출장지	부당 운임 지급내역
	계	7명				221,800
1	방역관리과	○○○	2019-06-28	동승	경북김천	44,000
2	방역관리과	○○○	2019-06-28	동승	경북김천	44,000
3	축산물안전과	○○○	2020-01-21	동승	세종	71,200
4	축산물안전과	○○○	2020-07-21	동승	담양	26,600
5	방역관리과	○○○	2021-01-27	동승	무안	12,000
6	방역관리과	○○○	2021-02-04	동승	무안	12,000
7	방역관리과	○○○	2021-02-10	동승	무안	12,000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용하이패스 사용료 133천원과 출장운임 221천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어 예산 낭비 및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 ① 부당지급 28명에 대해 1,375,430원을 회수하고, 2021년 공가 부적정 사용자 2명에 대해서는 공가를 연가로 변경하시기 바람(시정)
- ② 유연근무자는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생략

전라남도

시정·개선요구

제 목 도내 도축장 검사관 자격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위생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도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도축장 검사관을 배치하고 축산물 도축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도내 도축장 검사관 증표 발급 및 도축검사교육 이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도축장, 축산물 가공·판매·유통 등의 영업장에서 관련 검사 등을 하기 위해 수의사 자격을 가진 검사관을 임명·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관이 영업장 등의 출입·검사·수거를 할 경우에는 검사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매년 24시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장 등의 영업장에서 검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관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 주어야 하고,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매년 24시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2개월 마다 1회 교육으로 총 6회에 걸쳐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위생과)는 도내 도축장 22개소 중 휴업 도축장 3개소를 제외한 19개소에 [별표 1] “2019년 이후 도축장 검사관 배치 명세”와 같이 2019년부터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검사관 77명 배치하면서 검사관증을 발급하지 않고 공무원증으로 갈음하여 도축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도축장에서 도축 전과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면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24시간 도축검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2019년부터 도축장 검사관으로 배치된 77명의 수의사들이 [별표 2] “2019. ~ 2021. 9. 기준 도축장 검사관 도축검사 교육 미이수 명세”와 같이 2019년부터 2021. 9. 기준으로 한번도 도축검사를 받지 않는 검사관이 37명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도축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도축장 검사관의 자격에 대한 신뢰를 낮게 하였고 도축검사 교육 미이수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직무능력 향상을 낮게 할 우려가 있게 하였다.

3. 도축장 검사관 초과근무대장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축산기술검사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축산물검사원에 대한 근무시간은 도축장 개장시간¹⁾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축 도축을 위해 도내 소재하고 운영 중인 19개 도축장에 검사관을 배치하여 도축 검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 초과근무수당 등 9.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2)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 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 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1) 개장시간: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장 검사관이 개장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면서 명절 등 특수한 사항으로 근무 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위생과·각 지소)는 도축장이 관외에 위치하고 거리 등을 이유로 도축장으로 바로 출근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사용할 수 없어 출근과 퇴근 시간을 초과근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있으며 그 결재 근거로 [별표 3] “도축장 검사관 초과근무시간 인정 명세(’21. 6월~8월)”와 같이 ○○○ 등 20명에게 6월 480시간, 7월 471시간, 8월 387시간을 인정하고 수당을 집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문 인식이 아닌 수기 대장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으로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 ① 도축장 검사관으로 배치된 직원에게 검사관 증표 발급과 도축 검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도축장 검사관이 도축 검사 업무 수행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초과근무가 투명하게 확인되도록 시스템 등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개선)

[별표 1] ~ [별표 3]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동물위생시험소(관리팀·동물방역과·질병진단과·축산물위생과·축산물안전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도내에서 사육하는 동물의 방역과 전염병검사, 질병진단, 축산물 위생 등 안전 검사를 위해 시험연구장비 등을 구입하여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¹⁾를 붙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회계과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정기재물조사 지침 알림²⁾」과 「2020년 FRID 물품 정기재물조사 세부 추진계획 알림³⁾」 시행하면서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재물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태그단말기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 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은 전자태그를 인쇄하여 붙여서 관리하고 신규로 구입한 물

1)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태그에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저장하고, 적용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기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술

2) 회계과-31817(2020.6.24.)

3) 회계과-39738(2020.8.14.)

품에도 전자태그를 붙여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회계과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물조사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인쇄기를 구입하도록 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는 2010년경부터 비치하여 사용해 오다 고장 등으로 인해 2020년 6월경에 신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관리팀, 동물방역과 등 4개 과)는 2020년 정기 재물조사를 하면서 [표] “동물위생시험소 물품관리 현황”과 같이 2020. 5. 31. 이전 취득 기준 2,638개 관리 물품에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태그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하는데도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태그가 아닌 수기 라벨지를 부착하여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정기 재물조사 기준(2020. 5. 31.) 이후 취득한 340개 물품에 대해 2021. 9. 30. 감사일 기간 중에 방역관리과 등 4개 과에서 운영하는 물품들을 확인한 결과 전자태그가 아닌 수기 라벨지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동물위생시험소 물품 관리 현황

(단위 : 점)

부서	주요물품	합계	2020. 5. 31. 이전 취득	2020. 5. 31. 이후 취득
계		2,978	2,638	340
관리팀	사무기기 등	355	316	39
방역관리과	시험연구 장비 등	306	242	64
질병진단과	시험연구 장비 등	335	281	54
축산물위생과	시험연구 장비 등	224	158	66
축산물안전과	시험연구 장비 등	160	125	35
동부·서부·북부지소	시험연구 장비 등	1,598	1,516	82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재물조사에 대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태그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아 예산 낭비와 조사 결과의 신뢰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시험소 및 각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정기재물 조사 또한 전자태그단말기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결핵병 검사키트 등 소모품 구입 계약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동물위생시험소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는 연중 가축검진·검사 및 시험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표 1] “동물위생시험소 재료비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전체 예산(42,327백만원) 대비 평균 50.4%를 재료비(21,351백만원)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 1] 동물위생시험소 재료비 예산편성 현황(2018~2021년)

(단위 :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전체예산액	6,197,648	6,450,279	7,008,152	7,976,049
	재료비	2,615,331	2,867,199	3,203,524	4,158,257
	예산대비 재료비 비율	42.2%	44.5%	45.7%	52.1%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체예산액	1,051,267	814,169	1,136,806	1,226,046
	재료비	460,414	486,279	606,616	906,276
	예산대비 재료비 비율	43.8%	59.7%	53.4%	73.9%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전체예산액	1,186,456	1,174,344	1,402,798	1,961,708
	재료비	648,101	704,104	877,498	1,319,758
	예산대비 재료비 비율	54.6%	60.0%	62.6%	67.3%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전체예산액	1,190,972	921,028	1,510,601	1,118,455
	재료비	479,903	537,508	604,471	875,775
	예산대비 재료비 비율	40.3%	58.4%	40.0%	78.3%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서 및 결산서(2021년은 '21. 9. 29.까지 집행액 기준)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이면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구매예산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고,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1억 원 이상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다수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통합발주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본소 등 4개소)는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매년 구입한 소 결핵병 검사시약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맺어진 제품으로서 2단계경쟁 제품으로 등록되어있는데도

[표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회피하여 구매한 물품 현황(요약)”과 같이 소 결핵병 검사시약 등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구매하면서 2단계경쟁 방법에 의한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분할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쇼핑몰에 등록된 (주)○○○○ 등 업체에서 등록한 가격 그대로 구매하였다.

그 결과 2단계경쟁 방법으로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200,408천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회피하여 구매한 물품 현황(요약)

(단위 : 원)

구 분	회계연도	조달업체명	계약금액	예산낭비액
계			2,004,081,400	200,408,140
본 소	2021	○○○○ 외 1	243,262,530	24,326,253
	2020	○○○○ 외 1	115,454,820	11,545,482
	2019	○○○○ 외 1	634,367,120	63,436,712
동부지소	2020	○○○○	194,955,050	19,495,505
	2019	○○○○	181,575,200	18,157,520
서부지소	2020	○○○○	286,394,190	28,639,419
북부지소	2021	○○○○	120,527,110	12,052,711
	2020	○○○○	227,545,380	22,754,538

한편 2020. 6. 3. 이후 3회에 걸쳐 소 결핵병 검사키트 등 단일 품목에 대해 분할 구입하지 않고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라는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일상감사 의견을 회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21. 10. 1. 감사일 현재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라는 사유로 2단계 경쟁 제외 요청을 통해 2단계 경쟁을 회피하여 예산 절감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3. 축산물 검사 등 소모품 구입 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에 물품 계약 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분할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0조제1항과 제2항, 제32조의2,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 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중 가축검진·검사 및 시험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는 연간 구입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통합 구매가 가능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이나 2인 이상 수의견적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예정가격 대비 낮은 낙찰률이 적용되도록 하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및 3개 지소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소요물품 중 지속 구입이 필요한 일부 소요재료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표 3] “동물위생시험소 단가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표 1]~[별표 4]와 같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지 않고 동일한 시기에 같은 업체와 다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인 1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필요 시 마다 구입함으로써 일반입찰 또는 2인 이상 수의견적 계약 시에 비해 약165,170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3] 동물위생시험소 단가계약 체결 현황(2018~2021년)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단가품목	계약금액	업 체	예산대비 비율
2018	일반시약 118종 일반재료 306종	1,078,115	○○○○	25.6%
2019	시키트 6종	185,203	○○○○	35.8%
	일반시약 43종	172,018	○○○○	
	일반재료 148종	811,082	○○○○	
	핵산추출재료 11종	476,371	○○○○	

회계연도	단가품목	계약금액	업 체	예산대비 비율
2020	시키투 9종	103,739	○○○○	29.5%
	일반시약 45종	197,032	○○○○	
	일반재료 139종	675,167	○○○○	
	핵산추출재료 15종	584,490	○○○○	
2021	시키투 -	전자입찰 중(11종/1135bx) ⁴⁾		12.3%
	일반시약 42종	182,178	○○○○	
	일반재료 145종	710,150	○○○○	
	핵산추출재료 -	전자입찰 중(11종/1135bx)		

자료 : 동물위생시험소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단가계약 체결된 품목 수와 그 금액을 살펴보면 계약금액도 전체 예산액(재료비) 대비 절반이 채 되지 않으며, 연초 1회로 체결한 단가계약 체결 품목 외에 필요한 검진·검사용 소모품은 품목별 일반입찰이나 2인 이상 수의견적 계약 체결을 검토하지 않은 채 검사·검진업무 담당자별로 필요시 마다 조달 구입을 하거나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내에서 특정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전체 예산액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예산 대비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평균 50.4%) 및 본소를 포함한 3개 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사용되는 각종 재료 등은 동일시기에 본소 및 지소별로 구입품목이 동일하고, ○○○○, ○○○○, ○○○○ 등 타 시도에서는 시약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등 입찰참가등록이 된 업체와 일반입찰 및 2인 이상 소액수의 견적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검진·검사용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전라남도 14개, 전국 169개 업체가 있는데도 일괄 구매 등의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각각 계약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중복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의 기회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예상하지 못한 신규 질병 발생으로 다양한 검사 및 초동 대응을 위해 긴급히 소모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으며, 시약 등 일반재료 구입은 유효기간과 보관상의 문제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 발생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고 일정기간 지속되어 상시적으로 하는 동

4) 2021. 10. 01. 감사일 현재 전자입찰 진행 중

물위생시험소의 업무특성 상 발생 초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모품 구입 시에도 분할을 통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구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계기관 의견 동물위생시험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본부와 지소별 소모품 등 구입 품목과 시기가 같은데도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 및 행정력을 중복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구매하는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상개선)

[별표 1]~ [별표 5] 생 략